

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. 11. 29 선고 2019가단3304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9. 11. 29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7. 1. 25. 접수 제369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9. 9. 30.자 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)

판사정찬우

별지